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70

발의연월일: 2024. 9. 19.

발 의 자:이헌승·박성훈·박성민

윤상현 • 정성국 • 김도읍

곽규택 • 이성권 • 조경태

김대식 • 백종헌 • 서일준

박수영 • 주진우 • 서지영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하고, 참전명예수당과 국 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등의 수급 자격이 중복될 경우 해당 보상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 여 지급하도록 함. 또한 의료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비용을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은 월 42만원에 불과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이마저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참전 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등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지원의 범위 확대 및 수송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의2).

법률 제 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한다"로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참전명예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를 "제1항 본문에"로 한다.

다만,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부담하게 될 진료비용을 전액 면제하고, 그 면제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참전유공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참전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 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 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 요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 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명예수당 지급의 특례)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은 이 법 시행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지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참전유 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 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 <단서 삭제> 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 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 <삭 제> 원에 관한 법률 | 제4조제1항 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 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u>같은 법 제11조에</u> 따른 보훈 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 <삭 제> 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② ~ ⑥ (생 략)
-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 으로 지급하며, 그 <u>지급액 등은</u>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료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 치·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삭 제>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지급액은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
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
위소득의 100분의 35 이상으	<u> </u>
<u>한다</u> .	
⑧ 참전명예수당의 구체적	<u> </u>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
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성 경
으로 정한다.	
세7조(의료지원) ①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 다. <단서 신설>

② 국가는 <u>제1항에</u> 따른 참전 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 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 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생 략) <신 설>

<u>다만, 75세 이상인 참전유</u>
공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부담
하게 될 진료비용을 전액 면제
하고, 그 면제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u> </u>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참전유공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참
전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
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

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의수송시설이용요금을받지아니하거나할인할수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